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18 발의연월일: 2021. 3. 25.

발 의 자:이병훈·오영환·이상헌

홍영표 • 박성준 • 윤건영

남인순 · 조오섭 · 김승원

김영호 · 이성만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·대화방등에 정당·후보자에 대한 지지·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면 반드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고,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정보를 게시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고 있으며, 실명인증방법을 제공한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는 그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.

이는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소수의 이용자가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나, 선거운동기간 중 익명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밝힐 기회를 전면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음. 헌법재판소 역시 해당 규정이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

억제하여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할 수 있으며, 위법한 표현행위가 감소할 것이라는 추상적 가능성에 의존하여 모든 익명표현을 사전적·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을 지나치게 제한함을 이유로 2021.1.28.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.

이에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·후보자에 대한 지지·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게시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명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, 게시판의 이용자와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게시자에게는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공표·게시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익명표현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(안 제82조의6제1항, 같은 조 제2항 신설 및 같은 조 제6항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2조의6제1항 본문 중 "경우에는"을 "경우로서 정보등을 게시하려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"으로, "확인받도록"을 "확인받을 수 있도록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확인받도록"을 "확인받을 수 있도록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하며,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.

- ②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에 따른 실명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인터 넷홈페이지의 게시판·대화방 등에 정당·후보자에 대한 지지·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하려는 자에게는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 함된 정보등을 게시할 경우 제2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.
- ⑥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에 따른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·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에는 그 게시판·대화방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등이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 의하여 게시되었으며,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등을 공표하는 경우 제2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

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.

제261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제82조의6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· 대화방 등에 정당·후보자에 대한 지지·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하려는 자 또는 그 게시판·대화방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
- 3의2. 제8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·대화방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82조의6(인터넷언론사 게시판· 제82조의6(인터넷언론사 게시판·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) ① 인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) ① ---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 판·대화방 등에 정당·후보자에 대한 지지·반대의 문자·음성·화 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(이 하 이 조에서 "정보등"이라 한 다)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우로서 정보등을 게시하려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-----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(이하 이 조에서 "개인신용평가회사" 라 한다)가 제공하는 실명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 다. 다만, 인터넷언론사가 「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| 제44조의 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 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 수 있도록---

으로 본다. <<u>신</u> 설>

② (생략)

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이에 따라야 한다.

④·⑤ (생 략)

⑥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 넷홈페이지의 게시판·대화방 등에 "실명인증"의 표시가 없 _____

②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에 따른 실명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·대화방 등에 정당·후보자에 대한지지·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하려는 자에게는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정보등을 게시할 경우 제2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<<u>삭</u> 제>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⑥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에 따른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·

지·반대의 정보등이 게시된 경| 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 여야 한다.

⑦ 인터넷언론사는 정당·후보 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<u>요구한 경우에는</u>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 제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 ① • ② (생략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-----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다.
- 1. ~ 3의2. (생 략)
- 4. 제8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
5. (생략)

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 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 에는 그 게시판·대화방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등 이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 의하여 게시되었으며,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 되어 있는 정보등을 공표하는 경우 제250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.

<삭 제>

-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5. (현행과 같음)

- ④·⑤ (생 략)
-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2. (생략)
- 3. 제8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문 자·음성·화상 또는 동영상 등 의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자

<신 설>

4. (생략) ⑦ ~ ① (생략)

\bigcirc	• (5)	(혂행과	간은)
(4)	· (,)/	1 37 37 37	FD

6------------

--.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제8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·대화방 등에 정당·후보자에 대한 지지·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하려는 자에게 알려야할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
- 3의2. 제82조의6제6항을 위반하 여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· 대화방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아 니한 자
- 4. (현행과 같음)
- ⑦ ~ ⑫ (현행과 같음)